

## 「연세로 차 없는 거리 해제」에 따른 행정예고

관내 신촌 연세로에서 매주 금요일 14시~일요일 22시까지 운영중인 차 없는 거리 해제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2년 9월 20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[인]



1. 내 용 :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해제

2. 목 적

○ 연세로 차 없는거리 해제를 통해 차량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상인, 주민, 보행자 모두를 위한 연세로를 조성코자함.

3. 관련근거

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4. 예고대상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

○ 시 행 : 2022. 10. 9.(일) 22시 ~

○ 구 간 : 신촌오거리 ~ 연대앞 500m

○ 내 용 : 매주 금요일 14시~일요일 22시까지 운영중인 차 없는 거리 해제

5. 공고방법 :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sdm.go.kr>)

6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2. 9. 20. ~ 2022. 10. 11.(21일간)

7. 의견제출

○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(2022. 9. 20. ~ 2022. 10. 11.)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, 우편, FAX 등의 방법으로 서대문구청(교통행정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성 명(기관·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FAX 02-330-1709)

다. 보내실 곳 : 우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(연희동 168-6)

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

라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(☎ 02-330-1870)

※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# 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 (전화번호: 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## 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